2017년
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18. 1.



순서

l. 산출 기준 ········ 1	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······ 2	
II-1. 전체 사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II-2. 일반 사건 ······ 3	
III. 용어 정의 ····· 4	

I. 산출 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7. 1. 1. ~ 2017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 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^{*}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 - 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Ⅱ. 지역별ㆍ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Ⅱ-1. 전체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보건 지소 조산원

^{*}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Ⅱ-2. 일반 사건

(2017.1.1. ~ 2017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										(20	1/.1.1. ^	2017.1	2.01.(日	주일) 기·	٠, ١١١	: 건, %)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 각하 개시율	998 1,035 (49.1)	178 173 (50.7)	209 309 (40.3)	258 194 (57.1)	15 10 (60.0)	8 6 (57.1)	13 15 (46.4)	187 221 (45.8)	108 83 (56.5)	18 23 (43.9)	2 - (100.0)	2 1 (66.7)	-	<u> </u>	-
서울	개시 각하 개시율	316 328 (49.1)	78 78 (50.0)	38 66 (36.5)	69 52 (57.0)	5 (0.0)	4 2 (66.7)	2 2 (50.0)	79 87 (47.6)	40 30 (57.1)	5 6 (45.5)	1 - (100.0)	-	-	-	 -
부산	개시 각하 개시율	67 83 (44.7)	8 10 (44.4)	8 21 (27.6)	26 17 (60.5)	1 (50.0)	-	2 1 (66.7)	13 20 (39.4)	7 9 (43.8)	2 3 (40.0)	-	1 (0.0)	-	-	-
인천	개시 각하 개시율	57 70 (44.9)	3 21 (12.5)	13 26 (33.3)	22 11 (66.7)	1 - (100.0)	- 1 (0.0)	- -	10 5 (66.7)	7 6 (53.8)	1 - (100.0)	-	-	-	-	-
대구	개시 각하 개시율	31 39 (44.3)	10 9 (52.6)	4 6 (40.0)	8 15 (34.8)	2 1 (66.7)	-	-	5 6 (45.5)	2 - (100.0)	2 (0.0)	-	-	-	-	-
광주	개시 각하 개시율	32 31 (50.8)	7 4 (63.6)	9 5 (64.3)	10 7 (58.8)	1 (0.0)	2 - (100.0)	2 1 (66.7)	2 9 (18.2)	- 4 (0.0)	<u>-</u>	-	-	-	-	-
대전	개시 각하 개시율	45 30 (60.0)	8 2 (80.0)	19 11 (63.3)	7 5 (58.3)	- -	- 1 (0.0)	- 1 (0.0)	6 7 (46.2)	5 3 (62.5)	- -	-	-	-	-	-
울산	개시 각하 개시율	16 16 (50.0)	3 4 (42.9)	5 3 (62.5)	7 3 (70.0)	_ _	-	1 (0.0)	- 4 (0.0)	1 (0.0)	1 - (100.0)	1 1	1 1	-	1 1	-
세종	개시 각하 개시율	3 5 (37.5)	<u>-</u> -	-	1 (0.0)	_ _	-	-	2 2 (50.0)	1 2 (33.3)	-	1	-	-	1	-
경기	개시 각하 개시율	213 226 (48.5)	16 30 (34.8)	44 84 (34.4)	69 43 (61.6)	6 1 (85.7)	2 - (100.0)	3 4 (42.9)	42 40 (51.2)	26 19 (57.8)	3 5 (37.5)	1 1	2 - (100.0)	1 1	1 1	-
강원	개시 각하 개시율	22 31 (41.5)	1 1 (50.0)	14 20 (41.2)	1 5 (16.7)	1 - (100.0)	-	-	3 5 (37.5)	2 - (100.0)	-	-	-	-	_	-
충북	개시 각하 개시율	24 21 (53.3)	3 4 (42.9)	7 5 (58.3)	8 2 (80.0)	- -	- 1 (0.0)	- -	4 6 (40.0)	2 1 (66.7)	- 2 (0.0)	-	-	-	_ _	-
충남	개시 각하 개시율	38 27 (58.5)	12 3 (80.0)	10 6 (62.5)	3 4 (42.9)	-	-	1 2 (33.3)	6 11 (35.3)	3 1 (75.0)	3 - (100.0)	-	-	-	-	-
전북	개시 각하 개시율	23 25 (47.9)	10 3 (76.9)	5 4 (55.6)	5 7 (41.7)	<u>-</u>	- 1 (0.0)	- 1 (0.0)	1 7 (12.5)	1 2 (33.3)	1 - (100.0)	1 1	1 1	-	-	-
전남	개시 각하 개시율	14 20 (41.2)	2 1 (66.7)	2 9 (18.2)	7 6 (53.8)	<u>-</u> -	-	2 (0.0)	2 2 (50.0)	1 - (100.0)		1 1	-	-	-	-
경북	개시 각하 개시율	22 34 (39.3)	-	8 17 (32.0)	6 8 (42.9)	1 - (100.0)	- -	2 - (100.0)	2 2 (50.0)	3 2 (60.0)	- 5 (0.0)	-	-	-	-	- -
경남	개시 각하 개시율	62 41 (60.2)	17 3 (85.0)	17 20 (45.9)	10 8 (55.6)	3 - (100.0)	-	1 - (100.0)	7 8 (46.7)	5 2 (71.4)	1 - (100.0)	1 - (100.0)	-	-	-	-
제주	개시 각하 개시율	13 8 (61.9)	_ _	6 6 (50.0)	_ _ _	- 1 (0.0)	- -	_ _	3 - (100.0)	3 1 (75.0)	1 - (100.0)	-	-	- -	-	-

^{*} 개시율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Ⅲ. 용어 정의

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ㅇ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 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36조)

ㅇ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44조)

ㅇ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2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ㅇ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- 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- 2. 「의료법」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 시키는 기관일 것
- 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출 것
- 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제3조의4제1항 및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제2조 및 별표)

ㅇ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 - 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
 - 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 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 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 - 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(「의료법」제3조의3제1항)

ㅇ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ㅇ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제3조의2)

ㅇ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제3조의2)

ㅇ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(「의료법」제3조의2)

0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ㅇ 치과의원

-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0 한의워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ㅇ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 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제2조제3호)

ㅇ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제10조)

ㅇ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제8조)

ㅇ 조산원

-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·해산부·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 제2호)